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. 9. 10 선고 2014가단1729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5. 8. 27.

판결 선고 2015. 9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대구 서구 C 공장용지 2,164㎡ 중,
가. 별지 (1) 감정도 표시 5, 6, 7, 9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L) 부분 19㎡지상 담장을
철거하고, 위 선내 (L) 부분 19㎡를 인도하고,
나. 별지 (2) 감정도 표시 '나' 및 '라' 부분에 심어져 있는 수목을 수거하고,
다. 별지 (2) 감정도 표시 '다' 부분에 설치된 통기관과 '마' 부분에 설치된 광고판을 각 철거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3,330,320원과 2014. 6. 24.부터 1의 가.항 기재 토지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
102,53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0. 5. 6. 주식회사 보라인터내셔널로부터 대구 서구 C 공장용지 2,164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매수하고 2010. 6. 24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(1) 감정도 표시 5, 6, 7, 9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L) 부분 19㎡(이하 '이 사건 점유 부분'이라 한다)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, 별지 (2) 감정도 표시 '나' 및 '라'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수목이 심어져있으며, 별지 (2) 감정도 표시 '다'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통기관, '마'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광고판이 각 설치되어 있다(이하 담장, 수목, 통기관, 광고판 등을 합쳐 '이 사건지장물'이라 한다).

다.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2010. 6. 24.경부터 2014. 6. 23.까지의 임료의 합계는 3,330,320원이고, 2014. 6. 24. 이후의 월임료는 102,536원이다.

[인정근거 : 다툼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,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 지상의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 또는 수거하고,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하며,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점유 부분의 2010. 6. 24.부터 2014. 6. 23.까지 임료의 합계가 3,330,320원이고 2014. 6. 24.부터 2015. 6. 23.까지의임료가 102,536원인

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 이후의 이 부분의 임료도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3,330,320원과 2014. 6. 24.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2,536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보라인터내셔널과 측량을 한 후 1/2씩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그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였고,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 및 이 사건지장물 등의 철거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,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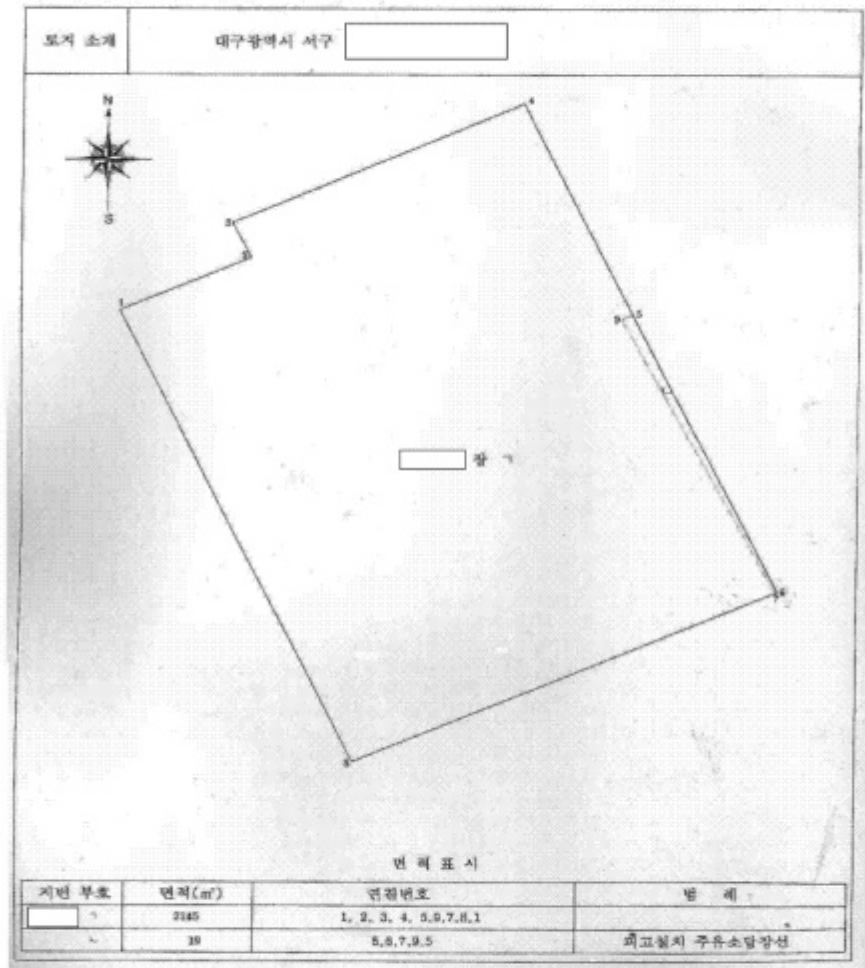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.

판사 이정목

별지 (1)

감 정 도



별지 (2)

감 정 도

